

제3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2. 이용정원

1) 방문요양, 방문목욕 : 인원 제한없음으로 한다.

3. 이용자 모집 방법

1)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수급자 모집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급여 종류를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2) 급여종류홍보 : 방문요양, 방문목욕.

3)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한다.

4) 기관의 급여 종류를 게시하고 기관의 출입구와 외벽면과 유리창에 안내 인쇄물을 부착한다.

5)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대구방문요양.com)와 이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 관련내용을 게시하고, 서면과 유선상담,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 등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자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1부
- 2)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인정 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내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계약해지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는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권리 2)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 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할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월 이용율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 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 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의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4-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구 분	내 용
이용료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납부방법	<p>납부방법은 장기요양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계좌에 다음 달 10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아래 계좌번호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대구은행 504-10-454831-8 다올재가노인복지센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p> <p>2) 효성CMS 자동이체 동의서를 이지케어에 작성하여 제출, 자동이체로 입금한다.</p>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유형	변경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 변경	수가변경 안내문 안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재계약 → 위험도평가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장기적 서비스 내용 증감(단순 일자 및 시간변경은 제외함)	수급자(보호자)상담 → 위험도평가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급여제공 내용변경 (공휴일, 연속급여 등)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 시 → 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 → 서비스 제공(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본인부담금 청구.

4-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p>가. 신체활동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 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p> <p>나.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p> <p>다.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생활 환경 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p> <p>라.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p>

2)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급여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 서비스	<p>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p>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 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 자체 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4) 효성CMS 자동이체 동의서를 이지케어에 작성하여 제출, 자동이체로 입금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관련(첨부)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①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